『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5959

제출일자 : 2021. 4.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제안이유

- 가.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위탁기간이 '21.5.2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치매의 진단과 치료·요양 등 치매 및 노인질환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함.
- 나.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운영
-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치매관리법」제16조의 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제4조(설치·운영)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위탁사무 대상)
 - 추진 필요성
 -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은 치매 및 노인질환자들의 요양 및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 치매관리법 제16조의 3에 의거 기부채납 시 수의계약 및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 위탁계약 갱신이 가능하므로 병원 운영의 전문성 및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재)운경재단과 재계약 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및 위탁범위

- 위탁사무: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운영 전반
- 위탁범위
 - 치매 및 노인환자의 외래·입원 진료와 요양
 - 대구광역시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 치매 및 노인환자와 관계된 외래 진료과 설치·운영
 - 치매 및 노인환자의 재가 간호 및 추구관리
 - 치매에 대한 교육·홍보 및 치매관리 전문요워 양성
 - 기타 치매 및 노인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등

라. 위탁사업 개요

- 수탁기관 : (재) 운경재단
- 위탁기간 : 2021. 5. 24. ~ 2026. 5. 23.(5년)
- 소 재 지 :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365(욱수동)
- 규 모: 지하1층 ~ 지상6층(8,023.14m²) / 병상수 252개
- 인력현황: 151명(의사 6, 간호사 36, 간병사 54, 의료기사 등 55)
- 장비현황 : 초음파 기기 등 107종 357대
- 운영형태 : 자체수익형

마.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적정 심의

- 「민간위탁운영위원회」심의결과(평가담당관, 21.3.4.): 재계약 적정
-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심의결과(21.3.23.) : 수탁기관(운경재단)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 붙임 1

나. 시지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 붙임 2

붙임 1 관련 법규

1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u>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u>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u>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u>기부채납한</u>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

제4조(설치·운영)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u>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u>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에게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u>병원을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u>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계약할 수 있다.

- 1. 의료법인(다만,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종합병원을 2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 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③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사무 기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위탁사무 대상)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2. 시립병원, 보건 ·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3. 환경 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 4.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5. 체육·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7.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9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붙임 2 「시지노인전문병원」운영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 위탁기간 만료('21.5.23.)에 따른 재계약 (위탁)여부를 결정하여 치매환자 관리 및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 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 제4조(설치·운영)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6조 및 제19조

Ⅱ 추진방향

-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 절차로 최적의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선정은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Ⅲ 현 황

- **의 위탁기간**: '16. 5. 24. ~ '21. 5. 23.(5년) / '02 6. 15. ~ 운영중(4회 갱신)
- **스탁기관**:(재)운경재단
- **위 치**: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365(욱수동)
- **규 모** : 지하1층 ~ 지상6층(8,023.14㎡) / 병상수 252개
- 운영형태 : 자체수익형
- 운영연혁
 -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조례 제정(2000. 3. 10.)
 - 의회 민간위탁 동의(2000.3.) 및 위탁운영자 선정(2000.4.) : (재) 운경재단
 - 병원 건립 및 운영 위·수탁 최초 협약(2000. 7. 6.)
 - O 건물 준공 및 사용허가(신축 : 2002. 6. 15. / 증축 : 2005. 3. 21.)
 - 시지노인전문병원 개원(2002. 6.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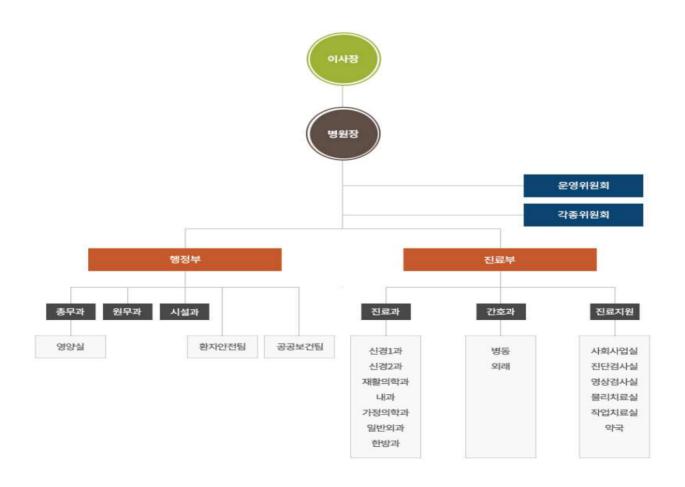
- 운경재단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2002. 9. 16.)
 - ※ 기부채납 가액 : 토지 895백만원(3,580㎡) / 건물 1,338백만원(신축)
- O 건립사업비

〈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자부담		
구 	프	유사합미	계	국 비	시비	사구님
	계	8,578,879	6,326,475	2,769,625	3,556,850	2,252,404
건	계	7,289,300	5,394,475	2,321,625	3,072,850	1,894,825
축	신축	4,479,625	3,140,800	1,570,400	1,570,400	1,338,825
비 증축		2,809,675	2,253,675	751,225	1,502,450	556,000
장 비 비		1,250,000	896,000	448,000	448,000	354,000
기타(차량구입)		39,579	36,000		36,000	3,579

■ 조직 및 인력

O 조직도



O 인력현황

〈단위 : 명 / 20.12.31.기준〉

				의 료 기 사					OH OF 11	사 회			
계 의사		간호사	간병인	방사 선사	임상 병리	물리 치료	작업 치료	기 타	약사	영양사 (조리)	복지사	사무	기타
157	7	54 (간호시38 조무사16)	56	1	1	7	2		1	2 (10)	2	10	4

※ 진료과목: 신경과2, 내과, 재활의학과, 한방과, 가정의학과, 외과

■ 환자현황 및 병상가동률

〈단위: 명, % / 20. 12. 31. 기준〉

연도	진 료	인 원	병 상	가 동	환 자 진 료			
	입원인원	외래인원	병상수	가동률	일평균 입원환자	일평균 외래환자	의사1인 환자	
2016	88,276	3,214	251	96.3	241.9	12.6	34.5	
2017	87,294	2,651	251	95.4	239.6	11.0	34.2	
2018	87,248	2,431	252	94.8	239.0	10.1	34.1	
2019	87,186	2,073	252	94.8	238.9	8.6	34.1	
2020	79,489	1,579	252	86.2	217.2	6.3	31.0	

■ 운영성과

- 대구시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 '나 등급'(2018, 2020)
- O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최우수 등급' (2020)
-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평가 상위 20%이내(2019, 2020)

IV 위탁계획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1. 5. 24. ~ '26. 5. 23.(5년)

O 위탁방법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후 재계약

※치매관리법제16조의 3: 기부채납 시 수의계약 운영평가 결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 갱신가능

- O 위탁사무 :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 전반
- 선정방법
 - 위탁사무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민간위탁운영위원회)
 -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 추진절차

2월		3월		4월		5월
추진계획 : 수 립	⇒	▶ 민간위탁운영 심의 (평가담당관실)▶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수탁자 선정)	⇒	▶ 의회 동의▶ 일상감사▶ 협약서(안) 심사	⇒	▶ 계약체결 및 공증▶ 홈페이지 공고

■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별도 계획 수립

- 구 성 : 6 ~ 9인 이내(위원장 포함)
- O 위 원 장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
- O 위 원 : 보건의료 분야 대학교수,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가
- O 위촉방법 : 공개모집 및 추천
- O 심의절차 및 기준
 - 신청자의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심의기준에 따라 채점
 - 전체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 총점 70점 미만 시 부적격 결정, 수탁기관 공개모집(별도계획 수립)

V 행정사항

O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 '21. 2월

O 민간위탁 운영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21. 3월

O 의회(문화복지위원회) 동의안 제출 : '21. 4월

O 위·수탁협약서(안) 일상감사 및 심사 의뢰 : '21. 4월

O 위·수탁 계약체결 및 공증 : '21. 5월

○ 수탁기관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개 : '21. 5월